

#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의무 이행 사항

[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2, 제51조의3]



## 변경신고 : 아래 사유 발생시 정해진 기간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
- ➔ 사업장명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: 사유 발생일로부터 **30일 이내**
- ➔ 10%이상 시설 변경(교체, 증설, 폐쇄)시 : 설치 이전(교체, 증설) 또는 폐쇄 이후(폐쇄)  
\* 비산누출시설 포함하여 교체, 증설시 가동개시 이전 신고
- ➔ 관리계획 변경 : 방지시설 설치 이전(교체, 증설) 또는 폐쇄 이후(폐쇄)
- ➔ 임대차 및 양도·양수 계약 :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

※ 변경신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(최대 20일 조업정지)되며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 
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)

## 시설관리 :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➔ 방지시설 THC 농도 측정(반기 1회, 기준 100ppm 이하)(I 업종은 50ppm이하)  
\* 그 외 관리대상물질 측정기준은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('21.12)에 따라 측정
- ➔ 비산누출시설 THC 농도 측정(연1회, 기준 500ppm이하)
- ➔ 포집시설의 포집유속 0.5m/s 이상 유지
- ➔ 연 1회 연간점검 보고서 제출 : 매년 4월 30일 까지  
\* 최초 신고시 최초점검 보고서 제출 :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(9월1일 이후 신고시 익년도 4월 30일 까지)
- ➔ 그 외 업종별, 시설별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 관리(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'21.12)  
※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(최대 20일 조업정지)되며, 조치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(최대 30일 조업정지) 및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(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)

## 정기점검 : 매 3년마다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
- ➔ 정기점검 : 매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의 정기점검 수검  
※ 정기점검 미수검시 고발 및 행정처분(최대 20일 조업정지)되며,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 
(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3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)

📞 관련 문의사항 : 031-481-1399, 1400, 1403, 1425

# HAPs 비산배출시설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청해보세요!



## 비산누출시설 측정지원 : 비산누출시설 무상 측정을 지원합니다.

- ➔ 지원대상 : 매출액 100억 미만 중소기업중 비산누출시설 100개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
- ➔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자료(전년도 과세표준 증명)
- ➔ 신청방법 : 우편, 방문, 팩스(031-481-1434) ➔ 문의 : 031-481-1425 (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)

## 기술지원(컨설팅) : 제도이행에 어려움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합니다.

- ➔ 지원대상 :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
- ➔ 지원내용 : 비산배출시설 최적운영 방안 제시, 제 신고 방법 안내, 비산배출 시설 측정지원 등 및 비산누출시설 식별기준\* 이행지원 \* 비산누출시설 목록작성 및 바코드명판 설치 지원(누출시설 50개 미만 사업장)
- ➔ 신청방법 : 이메일 신청 haps@keco.or.kr ➔ 문의 : 032-590-3609 (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부)

##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: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.

- ➔ 지원대상 : 중·소기업(대기배출 4종, 5종 사업장 우선 지원)
- ➔ 지원내용 : 지원한도내 설치비의 90% 지원(자부담 10%)
- ➔ 지원한도 :

구분	입자상물질 방지시설	가스상물질방지시설		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공동방지시설
		일반	RTO, RCO, SCR, 전기집진시설	
설치비	최대 3억원	최대3억원	최대 6.2억원	최대 8억원
지원금	최대 2.7억원	최대 2.7억원	최대 5.6억원	최대 7.2억원

- ➔ 지원조건 : 방지시설 3년이상 운영,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 부착
- ➔ 신청방법 : 해당 지자체 신청(아래 연락처 참조)

##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 :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.

- ➔ IoT 측정기기란? :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현황을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
- ➔ 설치의무 : '23.6월부터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단계적 확대 예정 ➔ 지원대상 : 4~5종 사업장
- ➔ 지원내용 :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%지원(최대 369만원 지원) ➔ 신청방법 : 해당 지자체 신청(아래 연락처 참조)

해당 지자체 연락처

지역	지자체	부서명	전화번호	지역	지자체	부서명	전화번호	지역	지자체	부서명	전화번호	
서울	강남구	환경과	02-3423-6227	서울	중구	환경과	02-3396-5627	경기	시흥시	대기정책과	031-310-5952	
	강동구	맑은환경과	02-3425-5934		중랑구	맑은환경과	02-2094-2442		파주시	환경보전과	031-940-8471	
	강북구	환경과	02-901-6754		인천 산업단지 내	인천광역시	대기보전과		032-440-3428	의정부시	환경관리과	031-828-4424
	강서구	녹색환경과	02-2600-4016			계양구	환경과		032-450-5414	김포시	환경지도과	031-980-5672
	관악구	녹색환경과	02-879-6263		남동구	환경보전과	032-453-8372		광주시	환경정책과	031-760-2904	
	광진구	환경과	02-450-7808		부평구	환경보전과	032-509-6655		광명시	환경관리과	02-2680-6460	
	구로구	환경과	02-860-2875		서구	환경관리과	032-560-4632		군포시	환경과	031-390-0243	
	금천구	환경과	02-2627-1515		연수구	환경보전과	032-749-7914		하남시	환경정책과	031-790-5856	
	노원구	녹색환경과	02-2116-3211		중구	위생환경과	032-760-7393		오산시	환경과	031-8036-6422	
	도봉구	환경정책과	02-2091-3247		동구	환경위생과	032-770-6528		양주시	환경관리과	031-8082-6331	
	동대문구	맑은환경과	02-2127-4639	미추홀구	환경보전과	032-880-4343	이천시		환경보호과	031-644-2358		
	동작구	맑은환경과	02-820-9850	홍진군	환경복지과	032-899-2612	구리시		환경과	031-550-2254		
	마포구	환경과	02-3153-9263	강화군	환경위생과	032-930-3333	안성시		환경과	031-678-0744		
	서대문구	환경과	02-330-8796	수원시	환경정책과	031-228-3453	포천시		환경지도과	031-538-2257		
	서초구	무문환경과	02-2155-6457	고양시	기후에너지과	031-8075-2655	의왕시		환경과	031-345-3828		
	성동구	맑은환경과	02-2286-5496	용인시	기후에너지과	031-324-2244	양평군		환경과	031-770-2258		
	성북구	환경과	02-2241-3044	성남시	기후에너지과	031-729-3643	여주시		환경과	031-887-2252		
	송파구	환경과	02-2147-3284	부천시	환경과	032-625-3164	동두천시		환경보호과	031-860-2241		
	양천구	맑은환경과	02-2620-4865	화성시	기후환경과	031-5189-6717	가평군		환경정책과	031-580-2440		
	영등포구	환경과	02-2670-3470	안산시	산단환경과	031-481-2904	과천시		환경위생과	02-3677-2247		
용산구	맑은환경과	02-2199-7665	남양주시	기후에너지과	031-590-4260	연천군	환경보호과	031-839-2252				
은평구	맑은도시과	02-351-7633	안양시	기후대기과	031-8045-2246							
종로구	환경과	02-2148-2464	평택시	환경정책과	031-8024-3757							